

2006년도 고성군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금기금 운용계획안

(의안번호 제943호)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5. 11. 25. 고 성 군 수
나. 회 부 일 자 : 2005. 11. 28.
다. 상 정 의 결 일 자 : 2005. 12. 12. 총무위원회 상정의결

2.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조성사유

- 고성군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·고등학교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저소득층 자활 및 생활안정 도모

3. 주요골자

- 기금은 이자율이 가장 높은 방법으로 2년 이하로 금융기관에 신탁 또는 예치
- 기금재원은 적립금의 이자수입으로 지급
- 기금 지급은 년2회 (상·하반기 각 1회)
- 기금지급 인원 및 금액은 13명 5,200,000원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본 계획안은 2004. 5. 20 고성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으로 고성군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·고등학교 학생에게 매년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저소득층 자활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학기금을 운용하여 왔으며,
- 2006년도 고성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기금운용계획안은 전년도 이월금 117,392천원과 적립금 이자 60천원을 합하여 117,452천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장학생 13명에 대하여 5,200천원의 예산으로 2006년 상·하반기 각 1회씩 대상자에게 장학금을 지급코자 하는 것으로

- 장학금 지급대상자 감소추세에 따라 이자수입으로 장학금 지급 가능여부 장학기금 예치상황, 기금관리 방법, 장학생 추천 및 선발기준 등에 대하여 제출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5. 질의 및 답변

- 문 : 기금 이자수입으로 대상자에게 충분하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까 ?
- 답 : 사실은 확보한 재원 범위내에서 대상자를 선발하고 있습니다.

6. 토 론 : 없음

7. 심사결과

- 2005. 12. 12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.